

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

(조인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59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21.

발 의 자 : 조인철 · 주철현 · 이개호
이건태 · 정준호 · 문진석
박수현 · 박용갑 · 양부남
한정애 · 서삼석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「디지털포용법」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보장하고 이용 환경 개선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사회에 참여하고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디지털 포용으로 정의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이동통신사 해킹과 같은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디지털취약계층은 관련 정보에의 접근이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음.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함에 있어 디지털취약계층이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침해사고 피해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

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,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포용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3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).

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672호 디지털포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(이하 “침해사고”라 한다)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

제3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이 관련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, 디지털역량지원센터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관·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1. 침해사고 발생사실 및 대응 방법·절차 등 관련 정보의 디지털취약계층 맞춤형 고지·안내 및 상담

2.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고·접수와 필요한 서비스 지원 제공
기관 연계
 3.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
· 훈련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사업을 수행하
는 데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20672호 디지털포용법 제8조(디지털포용 기본계획) ① · ② (생 략)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~ 4. (생 략) <u><신 설></u> 5. ~ 15. (생 략) ④ · ⑤ (생 략) <u><신 설></u>	법률 제20672호 디지털포용법 제8조(디지털포용 기본계획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4의2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」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(이하 “침해사고”라 한다)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 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 5. ~ 15. (현행과 같음) ④ · ⑤ (현행과 같음) 제18조의2(디지털취약계층의 침 해사고 대응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이 관련 정 보를 신속히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

응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, 디지털역량지원센터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관·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1. 침해사고 발생사실 및 대응 방법·절차 등 관련 정보의 디지털취약계층 맞춤형 고지·안내 및 상담

2.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고·접수와 필요한 서비스 지원 제공기관 연계

3.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·훈련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